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및 제 시민,사회,노동,지역 단체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hrfree416@gmail.com)
문 의: 박진 010-6268-0136, 김혜진 010-4538-0051, 미류 010-3667-2256
제 목: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참여 요청의 건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인 12월 10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4.16 인권선언 추진을 선포합니다

1.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세계대전의 야만과 폭력을 잊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해 인권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비록 선언에 불과했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지금까지 인간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역시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우선에 두는 사회 였는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였는가'라는 근본적 회의에 도달했습니다. 4.16 이전과 같은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는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가이드라인으로 4.16 인권선언을 만들어갑시다.
3.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고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의 내용을 서로 확인하며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시다. 아래 개요와, 첨부하는 기획안을 참조하셔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개요

- * 제 목 : 4.16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 * 일 시 : 12월 10일(수), 11~13시
-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 * 순 서 : 1부. 우리는 제안한다 / 2부. 우리는 행동한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사람 사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 4.16 인권선언으로 대답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1.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약칭 4.16 인권선언) 제안 배경과 취지

1) 세계대전의 야만과 폭력을 잊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해 인권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비록 선언에 불과했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지금까지 인간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역시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우선에 두는 사회 였는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였는가’라는 근본적 회의에 도달했습니다. 4.16 이전과 같은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는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가이드라인으로 4.16 인권선언을 만들어갑시다.

2) 4.16 특별법 제정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는 미완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실천의 과제는 더욱 분명해지기도 했습니다. 4.16 인권선언은 다양한 실천들이 진실과 안전으로 향하는 일관된 힘으로 묶일 수 있도록 이끄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3) 인권을 선언하는 과정은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존엄의 안전이 아닌, 재산과 영토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골몰했던 정부, 이윤을 추구하느라 생명과 존엄의 안전을 위한 권리들을 박탈해간 기업 등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를 겪을 수도 있는 우리는 어떤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밝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면서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를 시작합니다.

2. 4.16 인권선언 제안대회 기획안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진행 순서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 ; 세월호 유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연대하는 시민, 노동자, 종교인 등 (섭외 중)

2부. 우리는 행동한다 (40분)

- ; 인권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함께 펼쳐나가야 할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 알권리조례 제정, 작업중지권 실현, 기업살인법 제정, 집회시위의 자유 법률대응, 진실을 밝히는 시민행동, 팽목항 방문 등 (섭외 중)

4) 주최 및 주관

-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5) 사업 진행 계획

- ~11월 21일(금) ; 제안자 섭외 및 간담회 추진
- ~11월 28일(금) ; 웹자보 홍보 시작 및 간담회 진행, 언론 기고 조직
- ~12월 5일(금) ; 자료집 글 마감
- 12월 10일(수) ; 추진 대회

6) 참고 사항

- 4.16 인권선언은 2015년 4월 16일 제정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 인권선언의 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인권실태조사, 재난안전가족들과의 간담회,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그룹들과의 간담회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권선언은 권리의 내용을 밝혀 성안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들과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도 마련 활동도 추진됩니다.

3. 참여 요청 사항

1) 12월 10일(수) 추진대회에 참석해주십시오.

2) 추진대회에서 4.16 인권선언을 제안해주십시오.

- 당사자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으로부터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말하는 제안 글을 요청드립니다.
- 제안글은 자료집에 실리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3) 추진대회에서 “행동과제”를 제안해주십시오.

-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각자 제안하고 싶은 행동과제를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준비해주십시오. 자료는 자료집과 국민대책회의(또는 약속지킴이) 홈페이지에 실게 됩니다.

- 5분 이내의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4~5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행동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주시요.
 - (1) 이래서 제안합니다 ; 제안의 배경 또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 제안하는 행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 (2) 이것을 제안합니다 ; 제안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3) 이렇게 제안합니다 ;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4) 우리가 제안합니다 ; 행동을 제안하는 주체 혹은 단위를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참고자료 또는 사이트, 문의처 등을 알려주세요.

4)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말하는 언론 기고를 요청드립니다.

- 지면 칼럼이나 각 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 4.16 인권선언을 소개해주세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_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

I.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1.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아직 기억은 완성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경과 원인, 의미와 과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봤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경험들이다. 구조하지 않고 방치된 죽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권력,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 대한 모욕, 공감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지점에서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부당하고 부정의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사건으로.

2.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권리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 사건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지는 정부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다. 오직 탈출하는 선장과 선원들만 경비정에 싣고 현장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내버려두는 것이 권리 보장이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왜곡된 감각)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생명권은 살인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자원들을 차단하고 철회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3.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본 것은 여객선 침몰과 구조 실패만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언론의 오보, 가족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주장을 할 경로의 부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진압한 경찰의 행위, 노란 리본조차도 달지 못하게 하는 정부기관의 명령 등이 더해지면서 고통과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MBC는 언론의 자유라며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고, 한편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구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꼭 짚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4.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 또는 생존자들만 겪은 사건이 아니며, 그/녀들조차도 ‘피해자’로 뭉뚱그려질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접근하기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또한 구조작업에 참여한 사람,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사와 관련해 경험했던 것들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펴야 한다.

II. 참사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5. 세계인권선언은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참혹함으로부터 성안되었다.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할 사건, 누구도 내몰리지 않아야 할 사건이라는 인류의 감각이 인간의 존엄을 선언했다. 인권선언은 원칙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진다. 원칙의 내용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이끄는 ‘일관된 힘’이다. “원칙은 실질적 강제력이기보다는 ‘자명한 구속력’이다.”(〈인권의 대전환〉)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는 한국사회 역시 이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남긴 과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경로일 뿐이다. 특별법에 갇히지 않는 대중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들로 확인되어야 한다.

6.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참사의 고통을 깊고 깊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과 사고의 현장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신속하고 유효한 구조를 받을 권리-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처참하게 무너진 권리-조차도 우리에게선 선언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과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권리 등을 포함해, 재난이나 사고에서의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권리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자원활동가 포함)의 권리도 짚어져야 한다.

7.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진실을 밝히고 알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원인, 후속조치들에 관해 아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동시에 진실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대체로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과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동시에 여러 원칙들이 밝혀져야 한다. 독립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조사활동, 피해자의 특별한 지위,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주장되는 모든 사람과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제시했던 원칙은 모든 재난이나 사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8. 재난이나 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재난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지목하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대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올해 1월 청와대 신문고에는 이미 청해진해운의 위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다. 그러나 무시되었다.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다. 위험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멈추고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모두 각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직접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통제나 감시, 전문가의 권위 등은 권리에 뒤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III. 인권의 시선으로 책임을 밝혀야 한다

9.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사회의 각 행위 주체들은 그에 따른 의무 혹은 책임을 가진다. 이때의 책임은 법적 책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고, 위험을 줄여나가며, 안전을 해치는 조건과 상황을 막아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모두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책임지는 것-예를

들어, “국민 의식 변화의 계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예를 들어, “최종 책임”-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다.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의 역할과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의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여러 행위들이 어떻게 참사의 원인을 구성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을 더욱 폭넓게 확산하고 심화시키는 주체가,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주체가,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강요하는 주체가 더욱 크고 깊은 책임을 져야 한다.

10.

특히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밝히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의 생산, 분배, 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히고 그에 합당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는 231회 운항 중 139회 과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은 29억 5천만 원의 초과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세모그룹의 수익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관리의 역할을 맡았던 여러 기관과 정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위험을 방치하고 일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각각의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해경 123정장이 구조 실패의 직접적 책임을 지더라도 더욱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기관 및 행위자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11.

사회구성원 개개인으로서 지는 책임도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목숨을 내걸고 구조할 의무를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개개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참사 초기 선장과 선원이 비정규직이라, 항해사가 여성이라 무책임하거나 무능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선장과 선원이 선장과 선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서 무책임하다는 시선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그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를 문제 삼고 그것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해경 개개인은 최선을 다해 구조해야 할 책임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해경 개인이든 최선을 다해 구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해경(기관, 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크다. 진실과 안전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진실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12.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임은 참사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한과 권력에 부합하도록 물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과 책임의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조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재난구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중앙집중적으로 강화되는 것만이 안전대책인 것은 아니다.

IV. 인권을 선언하는 과정이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13.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이었다. 예를 들어 해경은 구조보다도 경비와 조업 단속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왔고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활동은 부차화되었다. 또한 기업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가로막혀왔다. 경찰이 공공안전을 내세울 때에도 그것은 언제나 인권침해의 다른 이름이었다. 인권선언은 안전을 둘러싼 세계관의 경합이기도 하다. 우리는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4.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정책, 제도, 법 등이 맞물려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

의 문제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세상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선언은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권의 목록이 스스로 인권을 보장하거나 실현하지는 않는다.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다.

15.

각자의 행동 과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우리 삶에 닳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진실을 탐문하고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안전을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안전을 위협당하는 노동자와 시민으로서, 참사를 함께 겪는 시민으로서, 훨씬 다양한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동의 위치와 관계가 인권선언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인권선언에 따라 실질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조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국회의 법 등을 검토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6.

인권선언의 어떤 내용도 다른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이유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권리의 행사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의 목록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변화를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 인권선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인권과의 관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는 말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와 다른 여러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인권을 선언하는 과정은 연대할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